

화학물질부터 생활화학제품까지 KCL이 함께합니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시험 · 검사 안내

(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및 제2018-12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1. 제도 소개

위해우려제품 관련 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2015년 1월 1일 시행
 -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 표시 기준 준수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 2015년 4월 1일 시행, 2018년 1월 22일 개정
 - 화평법 제2조 제16호,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품목별 안전기준 · 표시기준 준수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 자가검사를 받은 이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포장에 자가검사번호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 없음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 · 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일般 생활화학제품(19종)					살생물제품(4종)
세제류	코팅 · 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 · 염색류	기타류	살생물제품류
세정제, 합성세제,	코팅제, 방청제,	방향제,	물체 탈 · 염색제,	양초,	소독제, 방충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습기제거제,	방부제, 살조제
자동차용 워셔액,	틈새충진제		인쇄용 잉크 · 토너	부동액	

※ 17.8.22 고시 개정에 따른 신규 품목

※ 인쇄용 잉크 · 토너는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2017.12.29까지 기준 충족)



2.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안전기준

-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와 국내·외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댓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됨

표시기준

- 유해성분에 대한 위험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안전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의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에 따라 표시
-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

3. 제품 관리

위해우려제품 안전성 조사

- 매년 환경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들을 구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조사
- 화평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회수, 판매금지, 개선, 시정 등 조치

위해우려제품 시장모니터링

- 시장감시단을 구성하여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기준 이행 촉진



개정 고시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및 제2018-12호)

1. 주요 내용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마련 및 함량 기준 제시
-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텀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 세제류 제품에 대하여 2종 알러지 유발 향료 성분 중 2종은 시험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당물질의 시험 분석 가능한 대표성분으로 변경
(기존) 25.참나무이끼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개정) 25.아트라놀(CAS No 526-37-4), 26.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
※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과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의 구성성분이다.

2. 고시 개정 세부 내용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마련 및 함량 기준 제시
- 함유량 제한이 있는 살생물물질에 한하여 제품에 사용 시 함유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경과조치 : 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 (2018.2.22까지 기준 충족)
※ 기존 자가검사 부여받았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포함

• 세정제 스프레이형 사용가능 살생물물질(26종)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일반용 ⁽¹⁾	자동차용		일반용 ⁽¹⁾	자동차용
프로필렌글리콜(57-55-6)	37 이하	- ⁽²⁾	자일렌(1330-20-7)	3 이하 ⁽⁴⁾	8 이하
에탄올(64-17-5)	- ⁽³⁾	- ⁽²⁾	BIT(2634-33-5)	8 이하	16 이하
포믹에시드(64-18-6)	0.5 이하	49 이하	트리클로산(3380-34-5)	2 이하	2 이하
메틸알코올(67-56-1)	2 이하	37 이하	DDAC(7173-51-5)	0.14 이하	0.44 이하
이소프로필알코올(67-63-0)	9 이하	- ⁽²⁾	은(7440-22-4)	7 이하	5 이하
아세톤(67-64-1)	11 이하	11 이하	구리(7440-50-8)	12 이하	23 이하
나프탈렌(91-20-3)	0.2 이하	9 이하	염화벤잘코늄(8001-54-5)	0.36 이하	1 이하
벤질알코올(100-51-6)	13 이하	65 이하	OIT(26530-20-1)	0.11 이하	0.32 이하
에틸렌글리콜(107-21-1)	48 이하	- ⁽²⁾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34590-94-8)	45 이하	- ⁽²⁾
글루타알데히드(111-30-8)	0.02 이하	6 이하	(C=12-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68391-01-5)	0.36 이하	1 이하
살리실산메틸(119-36-8)	20 이하	20 이하	벤질알킬(C=12-16)디메틸암모늄(68424-85-1)	0.34 이하	1 이하
벤조산벤질(120-51-4)	22 이하	22 이하	2-부톡시에탄올(111-76-2)	4 이하	14 이하
에탄올아민(141-43-5)	0.1 이하	6 이하	IPBC(55406-53-6)	- ⁽³⁾	- ⁽²⁾

제품 함유 시 시험검사 대상 물질

주 (1)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한다.

(2) 자동차용일 경우 함유량 제한이 없는 물질은 시험검사 대상을 질에서 제외한다.

(3) 일반용일 경우 함유량 제한이 없는 물질은 시험검사 대상물질에서 제외한다.

(4) 다만, 스티커제거용 제품의 경우 70 % 이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방향제 스프레이형 사용가능 살생물물질(26종)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프로필렌글리콜(57-55-6)	47 이하	DDAC(7173-51-5)	0.005 이하
에탄올(64-17-5)	-(5)	온(7440-22-4)	0.018 이하
벤조산(65-85-0)	1 이하	염화벤잘코늄(8001-54-5)	0.5 이하
이소프로필알코올(67-63-0)	12 이하	피레트럼(8003-34-7)	0.7 이하
아세톤(67-64-1)	-(5)	OIT(26530-20-1)	0.12 이하
살리실산 (69-72-7)	37 이하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57 이하
벤질알코올(100-51-6)	17 이하	(C=12-18)일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68391-01-5)	0.5 이하
에틸렌글리콜(107-21-1)	0.2 이하	(벤질알킬(C=12-16)디메틸암모늄 (68424-85-1))	0.5 이하
살리실산메틸(119-36-8)	13 이하	이산화티타늄(13463-67-7)	-(5)
벤조산벤질(120-51-4)	-(5)	IPBC(55406-53-6)	-(5)
BIT(2634-33-5)	0.7 이하	염화수소(7647-01-0)	-(5)
트리클로란(3380-34-5)	16 이하		

제품 함유 시 시험검사 대상 물질

주 (5) 함유량 제한이 없는 물질은 시험검사 대상물질에서 제외한다.

• 탈취제 스프레이형 사용가능 살생물물질(22종)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물질명(CAS No.)	함유기준(%)	
	실내공기용 ⁽⁶⁾	물체용		실내공기용 ⁽⁶⁾	물체용
프로필렌글리콜(57-55-6)	46 이하	-(7)	트리클로란(3380-34-5)	7 이하	3 이하
에탄올(64-17-5)	-(8)	-(7)	DDAC(7173-51-5)	0.0015 이하	0.18 이하
벤조산(65-85-0)	1 이하	10 이하	염화벤잘코늄(8001-54-5)	0.5 이하	1 이하
이소프로필알코올(67-63-0)	12 이하	24 이하	피레트럼(8003-34-7)	0.7 이하	1 이하
아세톤(67-64-1)	-(8)	-(7)	OIT(26530-20-1)	0.1 이하	0.4 이하
살리실산 (69-72-7)	37 이하	19 이하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56 이하	-(7)
벤질알코올(100-51-6)	16 이하	34 이하	(C=12-18)일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68391-01-5)	0.5 이하	1 이하
에틸렌글리콜(107-21-1)	0.2 이하	6 이하	(벤질알킬(C=12-16)디메틸암모늄 (68424-85-1))	0.5 이하	1 이하
살리실산메틸(119-36-8)	13 이하	26 이하	염화수소(7647-01-0)	-(8)	-(7)
벤조산벤질(120-51-4)	75 이하	27 이하	이산화규소(7631-85-1)	-(8)	-(7)
BIT(2634-33-5)	0.68 이하	1 이하	산화아연(1314-13-2)	-(8)	-(7)

제품 함유 시 시험검사 대상 물질

주 (6) 실내공기용은 의류 · 섬유 · 신발 등 물체용 이외의 모든 스프레이제형 제품을 말한다.

(7) 물체용일 경우 함유량 제한이 없는 물질은 시험검사 대상물질에서 제외한다.

(8) 실내공기용일 경우 함유량 제한이 없는 물질은 시험검사 대상물질에서 제외한다.



위해우려제품 신규(5종) 지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 경과조치 : 표[신규위해우려제품 조치기간] 참조

• 신규 위해우려제품 조치기간

품목	안전기준물질(mg/kg)	안전기준 조치기간	표시기준 조치기간
부동액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신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자동차용 워셔액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7년 12월 30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신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습기제거제, 양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격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7년 12월 30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격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틈새충진제	신규	2018년 2월 22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 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품목	안전기준물질(mg/kg)	사용 금지 물질	기타
부동액			(안전요구사항) 어는점 등 9개 기준
자동차용 워셔액	① 메틸알코올 0.6 ⁽¹⁾ 이하	-	(안전요구사항) 어는점 등 11개 기준
	① 납 3.0 이하		
	② 카드뮴 0.3 이하		(품질시험)
	③ 비소 1.5 이하		조해액의 내누설성
	④ 수은 0.005 이하	-	
	⑤ 6가 크로뮴 1.5 이하		(표시물질)
	⑥ 다이메틸푸마레이트 0.1 이하 ⁽²⁾		염화코발트 ⁽²⁾
양초	① 납 600 이하	-	-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7,000 이하		
	② 품알데하이드 100 이하		(표시물질)
	③ 벤젠 1,000 이하		① 에틸벤젠
	④ 나프탈렌 2,000 이하		② 아이소프로필벤젠
	⑤ 1,2,4-트라이메틸벤젠 5,000 이하	①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③ 자일렌
	⑥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9,000 이하	② 알루미늄	④ 디부틸 프탈레이트
	⑦ 1,2,5-트라이메틸벤젠 8,000 이하		⑤ 톨루엔
	⑧ 1-도데칸올 20,000 이하		
	⑨ 리튬 10,000 이하		
	⑩ 바륨 400 이하		

주 (1) 단위 : %를 적용한다.

(2) 실리카겔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한다.



시험 · 검사 안내

시험 · 검사 절차

1. 검사의뢰

- 라벨링한 동일한 원제품 3개
- 검사신청서 1부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생산자확인서 1부(필요시)
- 기준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1부(해당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해당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1부(해당시)

2. 접수

- 서류확인 및 접수증 송부
- 수수료 납부 후 시험진행

3. 검사진행

- 안전기준, 용기강도 등 시험
- 2주 정도 소요
※ 생분해도 제외

4. 성적서 발급

- 방문 · Fax · E-mail 수령

※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시험검사 갱신 안내

- 자가검사 성적서는 **최초 시험검사 날짜로부터 3년간 유효**
-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성적서 갱신**
- 갱신 신청 가능 기간 : 성적서 만료일 전 6개월 이후 ~ 성적서 만료일 1~3개월 전

[예시] 성적서 발급일자 : 2015. 4. 1 (유효기간 : 2015. 4. 1 ~ 2018. 3. 31) 일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갱신 가능)

1. 2017. 9. 30부터 시험 신청 가능
2. 2018. 4. 1 전에 갱신 성적서 받아야
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시험 신청할 것
(합성세제의 경우, 시험기간 1개월 이상이므로
3개월 전 신청 권장)

유효기간 만료 이후(갱신 불가능)

1. 기존 자가검사번호 만료
(기존 자가검사번호 사용 제품은 불법제품)
2. 자가검사 신규 진행
(신규 자가검사번호 발급)

- 자가검사를 완료한 **기본 제품이 단종된 경우, 파생제품으로 자가검사 갱신 가능**
※ 다만, 신청서에 파생제품 표시 필수
- 동일모델 확인을 받았던 제품의 경우, 자가검사를 진행했던 원제품의 유효기간 확인 필요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성적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검사신청서 작성요령

접수번호		접수일	별첨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갱신 <input type="checkbox"/> 추가		KC인증 신고 확인사항	
신청인	업체명 KCL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설명(대표자) 홍길동
	전화번호 02-0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0	전자메일 hong@gmail.com
	주소 사무자동화제품의 주소와 통화하게 기재 사무자동화제품(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99(가산동)) 담당자(대표인) 전화번호 전자메일		
계산서 발급 * 담당자와 동일 시 생략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상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		
제품정보	품목 일반생활화학제품(일상용) 생산업체명 KCL 증명/용량/액수 100 mL	품목분류번호(HS) 0408-9400-0000 발기증으로하여 생산국명 대한민국 안전·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실내용기용, 스프레이형(분무형), 에틸 알코올	모델명 제작일 설명
	성적서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 <input type="checkbox"/> TAX수령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수령)		
	시료반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반송장(혹은 받은 수령증에 한함)		
<small>※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체가 제발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명에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체 개발생산을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모두 기입</small> <small>*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small>			
2018년 2월 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구하			

<제품사진(표시사항 포함)>	
필수 확인사항	1.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상 여부 3. 향기나 사용면역학안 검사상에서 시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주가검사 외에는 해당) 4.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상에서 시본 1부(해당 시 성적서 발급 전까지 제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개계검사증명서 시본 1부(당시 성적서 발급 전까지 제출) 6.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신제품과 같은 모양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배합비는 그 힘이 100%일 것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하고 "금지" 상호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을 밀접히 통증" 등의 문구를 갈색할 수 있음 다만, 약한제품 사용한 물질의 조성이 50% 넘지 않은 경우 "부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형광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적어주세요 표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성 및 혼합물질 금지물질의 규정" 고지 성분은 CAS 번호를 같이 명기해야 함.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물질의 안전성을 관한 자료는 구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국내 외 문헌자료 또는 서면 실적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DS) 등
	제부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용도

- 신규 : KC인증 받지 않은 신규 검사
- 갱신 :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검사
- 추가 : KC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추가 검사

품목(예시) (고시 [별표 1] 참조)

-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 / 살생물제품(소독제) 등

품목분류번호(HS)

- 수입품에 한함(국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

안전 · 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 품목별 특성 고려하여 모델 구분 (고시 [별표 2] 참조)

생산업체명

- 안전 · 표시기준 이행대상

제품사진

- 검사제품(완제품)의 사진
- 반드시 표시사항 포함

필수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해당
※ 고시 [별표 6] 참조
- 고압가스 : 에어로졸타입 스프레이형 300 mL 이상
- 사용제한물질
- 살생물 기능 성분 사용여부 : 살균, 항균 등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반영
- 제한물질
- 환경부 고시 참조
- 금지물질
- 환경부 고시 참조
- 제품별 표시물질 사용여부
※ 고시 [별표 2] 참조
- OEM 또는 ODM 생산 여부



성분 및 배합비 작성요령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접수번호	공란	접수일	공란	
□ 제품정보				
품목	품목증유번호(HS)	모델명		
생산업체명	생산국명	수입회사명(수입품에 한함)		
증정/용량/매수	안전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성분명	CAS No.	배합비 (%)	화학물질안전자료 (MSDS 등)	주요 기능
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음을 보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No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안전자료 제출 가능 직량제로 사용된 물질에 조합은 “항료”로 표시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의 경우, 살균·항균·소독·방부 등 질성성분에 대한 기능에 한해 기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경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폐기물류질법”에 저정(국립환경과학원)된 물질, 다른 유독물, 허가율질, 계한율질, 금지율질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명을 생략할 수 있음 화학물질안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유통안전보건자료(MSDS) 국내 정부 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국내 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 실적 자료 제품보안전자료(PDS) 등 				
상기 내용이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 3가지 방법

- 구성 성분에 따른 배합비
- 구성 성분에 따른 배합비 범위(영업기밀 이유)
- 구성 성분만 나열(영업기밀 이유)

● 화학물질안전성자료 제출(MSDS, PSDS 등)

- 구성 성분의 CAS. No 없을 시

● 살생물물질의 기능

- 살균, 항균, 소독, 방부 등

제품의 안전 · 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고시 제6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 수입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목	종류	품목	종류
1 세정제	용도, 제형	10 다림질 보조제	용도, 제형
		11 틈새충진제	용도, 제형
2 합성세제	용도, 제형, 산염기도	12 방향제	용도, 제형, 주요성분
3 표백제	용도, 제형, 계열(염소계 등)	13 탈취제	주요성분(일반 or 미생물), 용도, 제형
4 섬유유연제	용도, 제형, 농도(표준형/농축형)	14 물체 탈 · 염색제	용도, 제형, 색상
5 자동차용 워셔액	주성분, 제형	15 문신용 염료	용도, 제형, 색상
6 코팅제	용도, 제형	16 인쇄용 잉크 · 토너	용도, 제형
7 방청제	용도, 제형	17 소독제	용도, 제형
8 김서림방지제	용도, 제형	18 방충제	용도, 제형
9 접착제(물체 접착용)	용도, 제형	19 방부제	용도, 제형
(가발용, 쌍꺼풀용)	용도, 제형, 주요성분	20 살조제	용도, 제형
(속눈썹용)	용도, 제형, 주요성분, 색상	21 양초	제형
(네일용)	용도, 제형	22 습기제거제	용도, 제형
		23 부동액	주성분, 용도



• 예시) 방향제 : 실내공기용(용도), 스프레이형(제형), 에틸알코올(주요성분)

• 의미 : 용도, 제형, 주요성분이 같은 제품군은 대표적인 제품 시험하고 합격시 같은 제품군에 동일 자가검사 번호 사용

• 고려사항 : 같은 제품군 중 문제발생시 전부 리콜 대상임을 고려



검사 항목 및 수수료 안내

살생물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메틸알코올,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벤조산,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벤조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나프탈렌,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벤질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벤질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벤질알코올, 에틸렌글리콜,
글루타알데하이드, 벤조산벤질,	벤조산벤질, BIT, 트리클로란, DDAC,	벤조산벤질, BIT, 트리클로란, DDAC,
자일렌, BIT, 트리클로란, DDAC, 은,	은, 염화벤잘코늄, OIT,	염화벤잘코늄, OIT,
구리, 염화벤잘코늄, OIT,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2-부톡시에탄올, IPBC	(DPGME), IPBC	(DPGME)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

시험가능 제한물질, 표시물질 및 수수료

제한물질	표시물질
TBT, TPT, 아조염료, 형광증백제, 염화비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CMIT, MIT,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카드뮴, 비소, 납, 6가 크로뮴, 수은, 니켈, 브롬화 에틸, 톨루엔-2,4-디아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품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DEHP, 이소프로필벤젠, 2-부톡시에탄올, 톨루엔, P-클로로아닐린, 자일렌, P-자일렌, 에틸벤젠, 디클로로브로모메탄, 1,4-다이클로로벤젠, IPBC, 1,4-다이옥시인, 산화 프로필렌,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나프탈렌, 구리, 시트르산, 아세트산 비닐, 사이클로헥세인, TBT, 아세톤,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품알데하이드, d-리모넨 , 알러지 26종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

- 17년 4월에 유독물질로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 제품에 함유 시 표시해야 함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

중분류	소분류	검사기간 1)	수수료(원)	
			신규	추가 2)
세제류	세정제	세정제	10일	280,000 190,000
		스티커	10일	460,000 370,000
	합성세제	합성세제	40일	1,186,000 150,000
	표백제	표백제	10일	180,000 120,000
코팅, 접착제류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10일	940,000 280,000
	코팅제	광택용(일반형)	10일	360,000 360,000
		광택용(스프레이형)	10일	390,000 39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일반형)	10일	410,000 41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스프레이형)	10일	440,000 440,000
	방청제	방청제	10일	430,000 -
	김서림방지제	김서림방지제	10일	430,000 -
	접착제	일반형	10일	500,000 440,000
방향제류		가발용	10일	440,000 370,000
		속눈썹용	10일	460,000 320,000
		네일용	10일	380,000 380,000
	다림질 보조제	다림질 보조제	10일	120,000 -
염료 · 염색류	틈새충진제	틈새충진제	10일	460,000 -
	방향제	방향제	10일	320,000 200,000
	탈취제	일반형	10일	450,000 330,000
		스프레이형	10일	820,000 700,000
살생물제류		미생물	10일	400,000 320,000
	물체탈 · 염색제	물체탈 · 염색제	10일	130,000 -
	인쇄용 잉크 · 토너	인쇄용 잉크 · 토너	10일	100,000 -
	소독제	일반형, 스프레이형	10일	230,000 -
기타류	방충제	스프레이형(리필형 포함)	10일	200,000 -
	방부제	방부제	10일	280,000 -
	살조제	일반형	10일	150,000 -
		스프레이형	10일	230,000 -
기타류	양초	일반형	10일	40,000 -
	습기제거제	일반형	10일	150,000 -
		주원료(실리카겔)	10일	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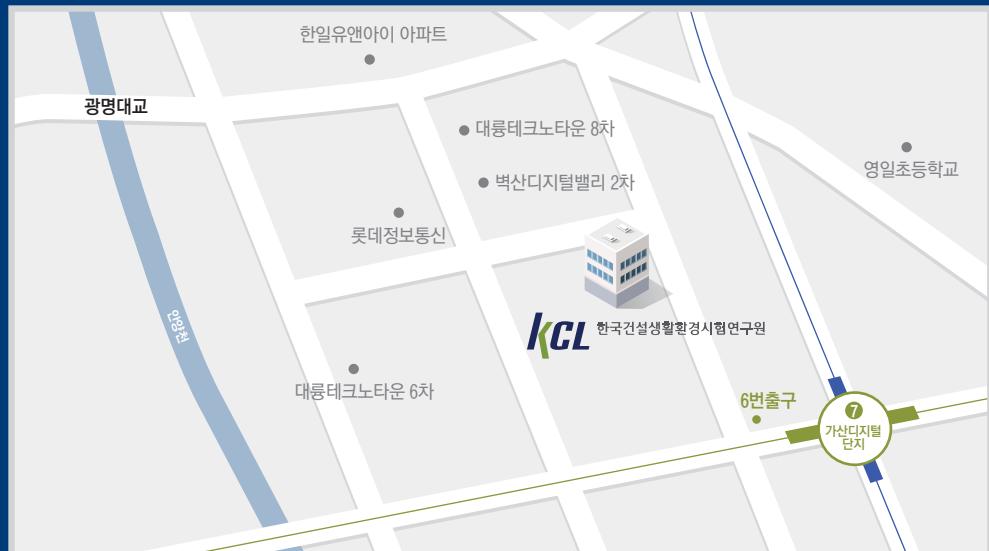
1) : 근무일(Working day) 기준임

2) : 기준 KC 인증제품

* 용기강도, 누수 및 중량 등 수수료 : 11,000~31,000원 추가

화학물질부터 생활화학제품까지 KCL이 함께합니다.

하시는 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지하철 1호선 :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7번 출구 50m 앞 도로 → 우측 150m → 길 건너편 삼거리 코너
 7호선 :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6번 출구 150m 직진 → 길 건너 삼거리 코너

버스 지선 : 5012, 5528, 5537, 6621, 6634
 간선 : 571 이용

문의사항

담당자	담당 내용	연락처	e-mail
고객지원팀(CS팀)	시험 · 검사 접수 문의	02-2102-2500	
조진범 책임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상담 전반	02-2102-2682	74cjbj@kcl.re.kr
손성희 선임연구원	코팅 · 접착제류, 염료 · 염색류, 살생물제류	02-2102-2681	ksonsong@kcl.re.kr
김승희 선임연구원	세제류	02-2102-2599	ssonglux@kcl.re.kr
이승지 주임연구원	방향제류, 표시사항 상담(고시기준)	02-2102-2679	sjlee0530@kcl.re.kr